

탁아사업추진에 대한 안내 말씀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어린이 집” 또는 “놀이방”으로 명칭)을 1990년 2월부터 설치, 운영합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탁아수요에 대응하여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동안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보육사가 아동을 맡아 보육하는 탁아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1990년 2월부터 정부지원 탁아시설 25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1992년도까지는 1,240개소를 설치하여 정부지원으로 저소득층 탁아대상아동 8만7천명을 보육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995년도까지 민간탁아시설 5,500개소와 가정탁아시설 25,700개소를 설치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맞벌이 부부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90년 2월부터 개설되는 탁아시설의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대상

생후 6개월부터 취학전 아동

■ 입소순위

—정부지원 탁아시설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소합니다.

- ①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
- ②보훈가족, 장애인, 편모(편부)가정 및 결함가정 등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아동
- ③일반가정아동

—민간탁아시설(가정탁아시설 포함)은 보호자의 입소신청 순서에 의합니다.

■ 입소방법

- 법정 저소득층자녀는 증명(확인)서를 첨부하여 탁아시설에 입소신청하며
-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는 시·군·구에 추천 신청하여 가정조사후 추천을 받습니다.
- 일반가정아동은 보호자가 탁아시설에 입소원서를 제출합니다.

■ 보육시간

- 탁아시설은 종일제(8~12시간)로 운영되며
-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계속 운영합니다.

■ 보 육 료

- 법정 저소득층 자녀는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 시·군·구청장 추천자는 보육료를 감면하며
- 일반가정아동은 수익자 부담으로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면제자의 경우에도 간식비 등은 하루 500원 범위내에서 보호자가 부담함.

■ 자세한내용문의

-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503-7578~9)
- 각 시·도 가정복지과
- 각 시·군·구 가정복지과 또는 사회과로 연락 바랍니다.

1990년 2월 일

보건사회부장관 김 종 인

8.02 (8.22 1/3면)

90.2.9